

# 베트남안전관련법 II

- 산업안전 관련 규정 (1995.1.20, 제6호/CP, 수상령) -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여 아시아가 중심이 되고 있고, 노동력에 있어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로 기업들이 이동하는 등 국제적 환경이 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안전관련법을 이해를 못해 예기치 않은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급속도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면서 서방 유럽 및 아시아의 시선을 끄는 베트남의 산업안전과 관련한 법 중 산업안전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위생에 관한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채수현 국장

## 1. 노동법의 개요

전월에 노동법에서 안전과 관련된 조문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노동법을 이해해야 할 것이기에 노동법에 대한 성질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산업안전 관련 규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베트남은 노동자 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자본주의 나라들과 같은 노사 대결적인 노동운동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강성 노조를 찾아볼 수 없다. 노동조합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일자리 창출일 정도로 노동조합은 기업에 협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외자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노사분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불만을 표시하는 정도이고 작업 거부도 대체로 몇 시간 안에 끝나버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노동자의 인권 및 인격에 대한 보호는 대단히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인들이 강조하듯이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인권이 아주 발달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를 함부로 대하면 쉽게 노사분규로 확대될 수도 있다.

### 가. 노동법규

베트남은 자본주의에서와 같은 세련된 노동법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1986년 쇄신정책(도이머이 정책) 이후 별도의 노동법 없이 외자법에 의해 임시적으로 노동법규를 운영하다가 1992년 4월 신헌법 제정 이후 1994년 6월에 노동법을 정식으로 공포하여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의 노동법규는 노동법에 집약되어 있다. 우리 나라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몇 개의 법률로 나누어져 있으나 베트남의 노동법규는 베트남 노동법에 집약되어 있다. 따라서 베트남 노동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건전한 노사관계를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노동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노무관리를 할 때 주의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근로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즉 인격 모독을 하면 심각한 노사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 단체 협약, 기타 근로자와의 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도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을 이행하고, 근로규율과 노동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남녀고용평등의 원칙: 여성근로자를 성차별

하거나 명예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 베트남은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높고, 여성의 권익이 잘 보호되는 나라이다. 만약 여성을 차별하거나 성추행을 한다면 노사분규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절대 금물이다.

(3) 사용자는 모집·사용·승급 및 근로의 대가 지급에 있어 남녀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

노동법에 노동자의 권리만 서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사용자의 합법적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는 것도 기술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권리도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 나라의 노동법체계에 상당히 다르다. 자본주의에서의 대립적 노사관계보다는 사회주의의 협조적 노사관계를 엿볼 수 있다. 한국 기업인들에 따르면 베트남의 노동법은 기업인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 나. 노동유관단체

베트남 내에 노동관련 단체는 크게 노동조합계열과 정부의 노동보호원 계열로 나눌 수 있다.

## 2. 산업안전 관련 규정

(1995.1.20, 제6호/CP, 수상령)

### 가. 개요

이 규정은 산업안전과 위생에 관한 노동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한 것으로 총 6장 21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 산업안전과 근로위생에서는 산업안전과 위생에 대한 조치 방안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유해위험 작업 및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및 근로자에 대한 보호구 지급을 법제화하고 있다.

제3장 근로재해와 직업병에서는 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용자와 근로자, 국가기관 및 노동조합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 나. 전문

### (1) 제1장 적용 대상과 범위

[제1조] 산업안전과 위생 관련 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이나 개인, 공무원과 국가고용직원, 각 분야나 각 경제부문 그리고 인민무장조직 내에서의 직업훈련생, 견습생, 인턴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베트남 영토상에서 활동하는 외국의 기업이나 조직 또는 기관 그리고 국제조직으로 하고 있다.

### (2) 제2장 산업안전과 근로 위생

[제2조] 노동법 제96조 제1항에 의한 산업안전과 위생 보장방안을 담은 실시계획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① 산업안전과 위생이 엄격히 요구되는 제 기계류, 설비, 원자재, 물질 등을 생산, 사용, 유지, 보관키 위해 작업시설이나 사업장을 신설, 확장, 보수할 경우에는 투자자나 사용자는 산업안전과 위생 보장방안을 담은 실시 계획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실시 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실시계획서는 유관기관과 연계한 산업안전과 위생에 관한 국가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작업시설의 지점이나 규모 그리고 작업시설이나 사업장으로부터 주민 거주지나 타 작업 시설까지의 이격 거리

- 있을 수 있는 위험, 유해요소나 작업과정 중 생길 수 있는 사고, 이의 예방과 처리 방법

② 이를 실시할 때 기 승인 받은 실시 계획서에 따라 산업안전과 위생을 보장하는 각 요구사

항, 내용, 방안 등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제3조] 노동법 제96조 제2항에 의한 산업안전과 위생 기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① 산업안전과 위생에 대한 기준과 규범은 이행이 강제된 기준과 규범이다. 국가의 산업안전과 위생의 기준과 규범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기계, 설비, 자재별 산업안전과 위생을 보장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근무지에서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산업안전과 위생상 엄격한 기준을 요하는 설비, 기계류, 자재와 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과 위생관련 국가감독기관과의 협의와 동의를 거쳐 통상부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조] 노동법 제97조 제반 유해 요소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① 최소 연 1회 이상 유해요소 수치를 검사해야 한다.
- ② 특이한 현상을 발견할 경우 이를 검사한 후 즉각적인 처리 및 조치가 있어야 한다.
- ③ 관리 서류의 작성과 적정한 규정의 준수

[제5조] 노동법 제100조 근로재해가 일어나기 쉬운 위험유해 요소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① 의약품, 붕대, 들것, 방독면, 구급차와 같은 적절한 기술의료 수단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 ② 발생 가능한 사고의 처리와 예방을 위한 방안이 갖추어져야 한다.
- ③ 구급대가 조직되어야 한다.
- ④ 구급대나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규모 단위사업장과 관련, 사용자는 긴급한 사고들을 처리하기 위해 스스로 구급대를 조직하며, 인근 단위 사업장이나

지역의 구급조직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위험·유해 요소가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노동보훈사회부가 정한 기준과 리스트에 따른 규격과 품질이 적합한 개인 보호 장비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한다.

[제7조] 노동법 제102조 산업안전과 위생에 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훈련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건강검진은 직업훈련생, 견습생을 포함한 근로자에게는 적어도 1년 1회 이상 그리고 과도 유해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어도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 ② 직업훈련생, 견습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은 업무가 주어지기 이전에 산업안전과 위생에 대해 안내와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담당자별 업무에 따라 적정한 산업안전과 위생을 보장하는 제 방안에 대하여 훈련 및 안내하고 그 이행에 대해 엄격하게 검사를 받도록 한다. 산업안전과 위생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요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훈련받지 않거나 이를 할 수 있는 안전카드를 받지 아니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교실을 열고자 할 때는 노동보훈사회부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노동법 제104조의 현물방식에 의한 보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노동보훈사회부의 보건부의 규정에 따른 수량과 체계에 맞는 보상.
- ② 교대 근무조에 대한 현장에서의 보상
- ③ 현물방식에 의한 보상을 대신하여 금전으로 지급하지 못한다.

## (3) 제3장 근로재해와 직업병

[제9조] 노동법 제105조 근로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조치 후 그 재해 근로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 ② 사망 또는 다수의 중상자가 있는 근로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현장을 원래대로 보존해야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국가감독기관이나 지역 공안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노동법 제106조 직업병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며, 건강기록서류의 내용이나 관리보존 방식에 대해서는 보건부에 의해 규정된다.

- ① 직업병에 노출된 근로자는 전문의료기관에서 따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②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각 직업병 리스트에 따라 적어도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기록서류를 별도로 유지해야 한다.

[제11조] ① 사용자는 노동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재해나 직업병에 처한 근로자에 대해 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 ② 노동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체에서 이후 고용할 목적으로 직업 훈련 또는 견습분야에 훈련생이나 견습생을 선발한 경우 만일 그 훈련이나 견습과정 중에 근로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 자신의 과실이 아닌 근로재해로 인해 근로능력의 81% 이상을 상실한 근로자나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에게 적어도 최저임금의 30개월 상당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직업훈련생이나 견습생의 과실

에 의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적어도 최저임금의 12개월 상당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12조] 노동법 제108조에 따라 산업재해나 직업병에 대해 조사하거나 조사, 통계,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며 단위사업장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의 대표가 이에 참가해야 한다. 조사서에는 사고의 경위, 피해근로자의 부상 내용, 손해의 정도, 발생원인, 발생책임 소재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사용자와 단위사업장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대표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② 모든 근로재해나 각 직업병의 경우에 대하여는 노동보훈사회부와 보건부의 규정에 따라 이를 모두 신고, 통계되고 보고되어야 한다.

## (4) 제4장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제13조] 사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매년 기업은 생산관리를 계획할 때 근로안전과 위생 그리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계획이나 방안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개인 보호 장비를 충분하게 갖추어야 한다. 또 국가규정에 따른 근로 안전과 위생에 관한 기타 여러 제도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기업내 근로 안전과 위생관련 제 규정이나 내부 및 방안을 시행하는 감독 직원을 임명하여, 단위사업장 노조와 협력하여 근로안전과 위생관련 직원 조직에 대한 제반 업무활동을 작성하거나 이를 유지·관리한다.
- ④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 기계, 설비, 원자재의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는 물론 기계, 설비, 자재 유형별로 맞게 그리고 근무 장소에 맞게 이에 적합한 근로안전과 위생에 관한 내규나 수칙을 작성해야 한다.

- ⑤ 근로자에게 산업안전과 위생의 기준, 규정, 방안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안내한다.
- ⑥ 규정된 기준과 제도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 ⑦ 근로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신고 및 조사 규정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6개월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근로 안전과 위생의 시행 상황과 근로 조건의 개선 결과에 대하여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 안전과 위생에 관한 각 규정, 내규, 방안을 준수하도록 강제 할 수 있다.
- ② 근로안전과 위생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업무수행자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
- ③ 근로안전과 위생에 관한 근로감독관의 결정에 대하여 관할 국가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근로감독관의 결정사항은 계속 엄격히 집행되어야 한다.

[제15조] 근로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부여받은 업무나 임무에 관련 근로안전과 위생에 관한 제 규정이나 내규를 집행한다.
- ② 지급받은 개인 보호 장비나 작업장내 각 안전 위생 설비를 잘 사용 관리해야 한다. 만일 이를 망실 또는 손상시켰을 때에는 배상해야 한다.
- ③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일으키거나 유해 위험 사고를 초래하는 위기상황을 발견했을 때는 이를 책임자에게 적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응급조치나 근로재해로 인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

[제16조] 근로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조건의 보장, 근로조건의 개선, 개인 보호장비의 충분한 지급, 훈련, 근로안전과 위생을 위한 방안의 시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근로재해의 발생 위험을 목격하거나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에는 업무를 거부하거나 작업장을 이탈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책임 있는 자에게 이를 즉각 보고해야 한다. 또 그러한 위협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을 때는 작업장으로의 복귀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사용자가 국가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계약이나 단체 협약상의 산업안전과 위생에 관한있는 국가기관에 이를 진정 또는 고발할 수 있다.

(5) 제5장 국가기관의 책임

[제17조] 노동법 제95조 제2항의 근로보호, 안전과 위생에 관한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의 입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노동보호사회부와 보건부는 각 부처나 유관 부문과 협력하여 근로보호, 근로안전과 위생에 관한 국가차원의 프로그램을 입안, 정부에 제출하여 사회경제발전 계획 내에 이를 반영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수상은 근로안전위생에 관한 국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상을 위한 자문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근로안전과 위생에 관한 각 유관부문이나 각급 기관과의 연계활동을 실시한다.

[제19조] 노동법 제180조 및 제181조의 근로 안전과 위생에 관한 국가관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① 노동보훈사회부는 아래사항에 대해 그 책임이 있다. 근로보호나 근로안전과 위생에 관한 법규나 정책 및 제도를 제정하며, 이를 공포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하거나 이를 공포한다. 근로안전에 관한 국가규정 체계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분류기준을 제정, 공포하고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근로안전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각 유관기관이나 각급기관을 안내·지도한다. 또 근로안전과 위생관련 정보 및 훈련을 제공하고 근로안전 분야에 있어서 외국 또는 국제조직과의 합작을 도모한다.
- ② 보건부는 근로위생관련 규범체계나 각 직업별, 업무별 건강 기준을 제정, 공포하고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근로위생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각 유관기관이나 각급 기관을 안내, 지도 실시한다. 아울러 근로위생 분야에 있어서 외국 또는 국제조직과 합작을 도모한다.
- ③ 과학기술환경부는 근로안전과 위생관련 과학기술의 연구와 응용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 근로상 개인 보호 장비의 품질은 근로안전과 위생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의 기술적 기준체계를 제정, 공포하고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 ④ 교육부는 각 대학, 기술, 전문, 직업학교의 강의 프로그램에 근로안전과 위생내용을 반영하도록 지도할 책임을 진다.
- ⑤ 각 부, 각 유관부문은 노동보훈사회부, 보건부와 문서상의 협의를 거쳐 유관 부문별 근로안전과 위생관련 규범, 기준 체계를 공포한다.
- ⑥ 방사능, 석유가스 개발 탐사, 철도 해운 육상 운송수단, 군 경찰 소관의 사업장 분야에서의 근로안전과 위생관련 국가관리에서는 해당 분야의 관리 기관이 노동보훈사회부나 보건부와 협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 ⑦ 성 또는 중앙 직속 시 인민위원회는 자신의 관할지역 내에서 근로안전과 위생관련, 국가 관리를 수행한다. 즉 근로안전과 위생의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목표들을 작성하여 경제사회발전계획 및 지방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 (6) 제6장 노동조합의 책임

[제20조] 국가기관이 근로보호와, 근로안전과 위생관련 국가적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또는 근로보호와 근로안전과 위생관련 과학연구 프로그램이나 법률, 정책, 제도 등을 작성할 때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도 이에 참여한다.

[제21조] ① 노동조합 조직은 각급 노동보훈기관이나 보건기관과 협력하여 근로안전과 위생관련 국가적 관리업무나 제 규정의 시행업무의 점검 및 감독에 함께 참가한다.

②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근로안전과 위생관련 규정이나 내규를 엄격히 집행하도록 이를 교육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기업이나 사업 단위 내의 근로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며, 근로안전과 위생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관리·유지한다.

#### (7) 제7장 시행부칙

[제22조]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있다. 노동법과 이 규정에 반하는 근로안전과 위생관련한 이전의 규정은 폐지한다.

[제23조] 노동보훈사회부와 보건부는 이 규정의 시행, 안내의 책임을 진다.

[제24조] 장관, 부급 기관의 장, 정부소속 기관의 장, 성이나 중앙 직속 시의 인민위원회 주석은 이 시행령을 시행할 책임을 진다. 